

울산항 항만운송(관련)사업 '변경 등록(신고)' 안내

□ 근거규정

- 「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」 제13조(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)

□ 제출서류 (※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)

【공통서류】 - 주소 변경, 대표자 변경, 업체명 변경 등

1. 등록(신고)사항 변경 신청서 1부

- 회사 자체 공문 또는 붙임 양식을 활용
 - 법정양식은 없으므로 편하신 방식으로 제출하시되, 변경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요청(변경 전후 사항 기재 등)

2. 기존 등록증(신고확인증) 원본 반납

3.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인 경우)

4. 사업자등록증 1부

【장비 변경의 경우】 - 항만용역업(통선업, 선박급수업) 등

○ 장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통선, 급수선: 선박국적증서, 선박검사증서, 임차선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선주배상책임공제(여객)증권(통선의 경우)
- 차량: 자동차등록증, 임차차량의 경우 임대차계약서

※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장비 변경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.

1.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1부(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)
2. (변경된) 사업계획서
3. 선박연료공급 등록장비(차량, 선박) 관련 서류 및 방제자재 비치 현황
4. 기존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확인증 원본 반납(최초 변경시에는 해당사항 없음)

항만운송(관련)사업 등록(신고)사항 변경요청서

요청인	상호명	등록 항만명 울산항
	등록(신고)업종	항만운송(관련)사업 등록(신고)번호
	성명(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전화번호 (FAX :)
	주소	

등록(신고) 변경 사항	변경 전	변경 후

변경 사유	
-------	--

「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」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(신고)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- 기존 항만운송(관련)사업 등록증(신고확인증) 원본 1부.(반납)	수수료 없 음
	-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.(법인의 경우에 한함)	
	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
	- 선박국적증서 사본,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.(항만용역업 중 통선업에 한함)	

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

[시행 2025. 3. 28.] [해양수산부고시 제2025-48호, 2025. 3. 28., 일부개정]

제13조(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) 해양수산부장관,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(이하 "항만운송사업자등"이라 한다)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이 맞으면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및 확인증의 발급은 항만운송사업등 관련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.